

#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정병용 의원

제출일 : 2025. 1.

## 1. 제안이유

- 시·군·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이 개정 및 시행[2025. 1. 3.]됨에 따라, 관내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 의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,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 강화 및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지원 사업 추가 신설(안 제3조제3호, 제4호)
- 예산지원 추가 신설(안 제4조제2항)
- 공유재산 우선 임대 신설(안 제4조의2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,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등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### ■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[시행 2025. 1. 3.] [법률 제19893호, 2024. 1. 2., 일부개정]

제33조(사회복지협의회)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(이하 "중앙협의회"라 한다), 시·도 단위의 시·도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"시·도협의회"라 한다) 및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단위의 시·군·구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"시·군·구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2. 1. 26., 2017. 10. 24., 2024. 1. 2.>